

제 2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

거창 친환경대중골프장 직영기업
설립 보고

거 창 군

거창 친환경대중골프장 직영기업 설립 보고

1. 제안이유

- 가. 거창 친환경대중골프장 조기이관 협약 체결('24. 8. 13.)에 따라 거창 친환경대중골프장(에콜리안 거창CC)의 관리·운영권이 2025년 1월 1일부터 거창군으로 이관되어 골프장 직영을 위한 조직 필요
- 나. 골프장 관리·운영의 조직 형태로 공익성과 기업성이 조화되고 지속적인 수익 창출을 위한 조직 형태로 지자체 직영기업을 설립·운영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설립개요

- 1) 명 칭 : 거창군 친환경대중골프장 지방직영기업
- 2) 설립형태 : 지방공기업 중 “직영기업”
- 3) 설립년도 : 2025년 1월 1일
- 4) 사업내용
 - 대상사업 : 친환경대중골프장 사업
 - 위 치 : 가조면 우륵길 410-284, 거창 친환경대중골프장

나. 설립 요건 검토

- 1) 「지방공기업법」 제2조(적용범위) ②항 3호
 -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 중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‘체육시설업’
- 2) 검토결과 : 설립 요건 충족
 - 체육시설업 여부 : 골프장업 ⇨ ‘등록 체육시설업’
 - 경상경비의 경상수입으로 충당여부 : ‘충당가능’

3. 조직구성(안)

가. 기본방향 : 현 에콜리안 거창골프장 직원 고용승계

나. 조 직 : 1조직 2담당(경영기획, 경기운영)

1) 관리자 : 1명 / 임명-지방자치단체장 ※ 임기제 가능

- 관련법 : 「지방공기업법」 제7조(관리자)

2) 담당별 업무분장

- 경영기획담당 : 업무계획, 계약·회계·수입 관리, 시설관리, 서무

- 경기운영담당 : 그린티운영, 코스관리, 경기운영 등

3) 인력구성 : 공무원 5 / 공무직 18 / 기타(기간제 14명 정도)

- 경영기획담당 : 공무원 3 / 공무직 9(프론트, 미화, 시설관리)

- 경기운영담당 : 공무원 2 / 공무직 9(티운영, 코스관리, 경기진행)

4. 재무회계

- 지방직영기업(골프장) 특별회계 설치

5. 참고사항

가. 거창 친환경대중골프장 직영기업 설립 계획 : 붙임 참조

나. 관련법령

1) 「지방공기업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

2) 지방공기업 설립기준(행정안전부 공기업지원과 / 2021.3.23.)

거창 친환경대중골프장 직영기업 설립 계획

1 배 경

- 거창 친환경대중골프장 조기이관 협약 체결('24. 8. 13.)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거창군 직접 관리·운영에 따른 조직 필요
- 골프장 관리·운영의 조직 형태로 공익성과 기업성이 조화되고 내년부터 본격 운영이 가능하여 지속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지자체 직영기업(지방공기업)의 형태의 조직 신설 ※ 유사사례 : 의령친환경골프장

2 관 련 법

- 「지방공기업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
- 지방공기업 설립기준(행정안전부 공기업지원과 / 2021.3.23.)

3 설립개요

- 명 칭 : 거창군 친환경대중골프장 지방직영기업
- 설립형태 : 지방공기업 중 “직영기업”
- 설립년도 : 2025년 1월 1일
- 사업내용
 - 대상사업 : 친환경대중골프장 사업
 - 위 치 : 가조면 우륵길 410-284, 거창 친환경대중골프장

【 거창골프장 조기이관 경과 】

- 2016. 6. 30. : 골프장 개장 ☞ 국민체육진흥공단 관리·운영
- 2019. 2. ~ 2023. 8. : 운영권 조기 이양 업무협약의 지속
- 2023. 8. : 국민체육진흥공단 조기인수 사전 의견 조사* 및 거창군 회신
 - * 「'22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」에 따라 친환경 대중골프장의 조기이관 기획 발생
- 2024. 3. ~ 8. : 조기인수 실무협약
- 2024. 8. 13. : 골프장(에콜리안) 조기 인수 협약 체결
 - ※ 2025. 1. 1. ~ : 거창군 직접 운영(골프장 관리·운영권 이관)

4 설립 요건 검토

- 「지방공기업법」 제2조(적용범위) ②항 3호
 -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 중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‘체육시설업’
 - 검토 결과
 - 체육시설업 여부(「체육시설법」 제10조) : 골프장업 ⇨ ‘등록 체육시설업’
 - 경상경비의 경상수입으로 충당여부 : ‘충당가능’
- ※ 23년 회계결산보고서

당기순이익	운영수익	운영비용	비고
1,206,009,586원	3,073,267,049원	1,867,257,463원	

⇨ 검토결과 : 설립 요건 충족

5 추진절차

단 계	내 용	관련법규
방침결정 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대상사업의 성격, 유형 등 내부 검토 ◦민간위탁, 직영, 공사, 공단 설립 등 형태별 추진방안 비교 분석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법제2조 ◦설립기준
방침결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기본방침계획 수립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설립기준
단 계	내 용	관련법규
심의단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의회보고 ◦주민공청회 실시(15일 전 사전공지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법제78조의6 ◦영제76조의2
조례제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조례안 마련·공고 ◦조례규칙심의회,의회심의,공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법제5조

6 세부 추진 계획

□ 주민공청회 실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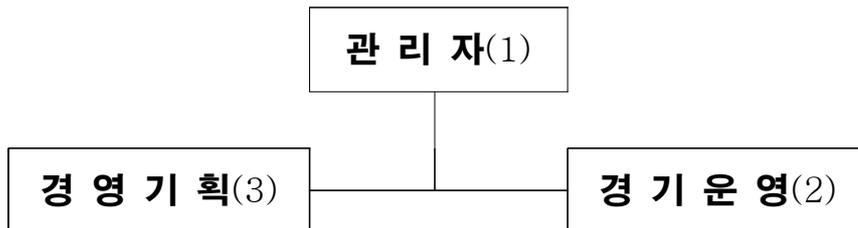
- 사전공고 : 공청회일 15일 전 / 개최목적, 개최예정일, 개최장소
- 주민공청회 : 2024. 10월 / 거창스포츠파크 회의실

□ 조례 제정

- 「거창군 친환경대중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조례」
 - 조례(안) 마련 : 목적, 설치, 시설, 회계, 운영 등
 - 입법예고 ⇒ 조례규칙 심의회 ⇒ 군의회 심의

□ 조직구성(안)

- 기본방향 : 현 에콜리안 거창골프장 직원 고용승계(근무 희망자)
▶ **현 운영인력 고용승계를 통한 전문성 유지 및 초기 경영 안정 도모**
- 조직도 : 1조직 2담당



- 관리자 : 1명 / 임명-지방자치단체장 ※ 임기제 가능
 - 관련법 : 「지방공기업법」 제7조(관리자)
- 담당별 업무분장
 - 경영기획담당 : 업무계획, 계약·회계·수입 관리, 시설관리, 서무
 - 경기운영담당 : 그린티운영, 코스관리, 경기운영 등
- 인력구성 : 공무원 5 / 공무직 18 / 기타(기간제인력 14명 정도)
 - 경영기획담당 : 공무원 3 / 공무직 9(프론트3,미화2,시설관리4)
 - 경기운영담당 : 공무원 2 / 공무직 9(티운영1,코스관리4,경기진행4)

□ 재무외계

-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설치
 - 관련 법 :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3조(특별회계)
 - 예산편성 : '25년도 당초예산 편성 일정에 따름

7 **향후계획**

- 2024. 10월 : 조례 시행규칙 마련
- 2024. 11월 : 골프장 명칭 확정
- 2024. 12월 : 행정업무 기반 마련